

CISG 제3편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1절(제53조-제59조) 대금지급



원광대학교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1절(제53조-제59조) 대금의 지급



■ 매수인의 의무(제53조)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매수인의 주요의무인 대금지급의무와 인도의 수령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54조 내지 제59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인도의 수령의무는 제60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대금지급의무와 인도의 수령의무 이외의 기타의무로는 물품보관의무, 보고의무, 협력의무를 들 수 있다.

■ 대금의 지급(제5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에는 그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 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제53조의 대금지급 의무를 보충하고 있다. 즉 대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식에 따르는 것도 대금지급 의무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역시 계약위반이므로 매도인은 제61조 이하의 모든 구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지급 준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며 면책은 제79조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3장 채수인의 의무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제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은 물품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그 가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며, 제14조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아 규정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14조는 물품의 가격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 대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학설은 제14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14조와는 달리 가격을 정하지 않고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가격결정을 위해 제55조가 원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물품의 가격은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 아래에서 매도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액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즉, 계약체결시에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이 계약대금이 된다.

■ 순중량에 의한 결정(제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물품의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에 한해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순중량에 의해 대금이 결정된다. 순중량이란 총중량에서 포장무게를 뺀 것이다. 이 규정 역시 당사자 의사나 관행, 관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 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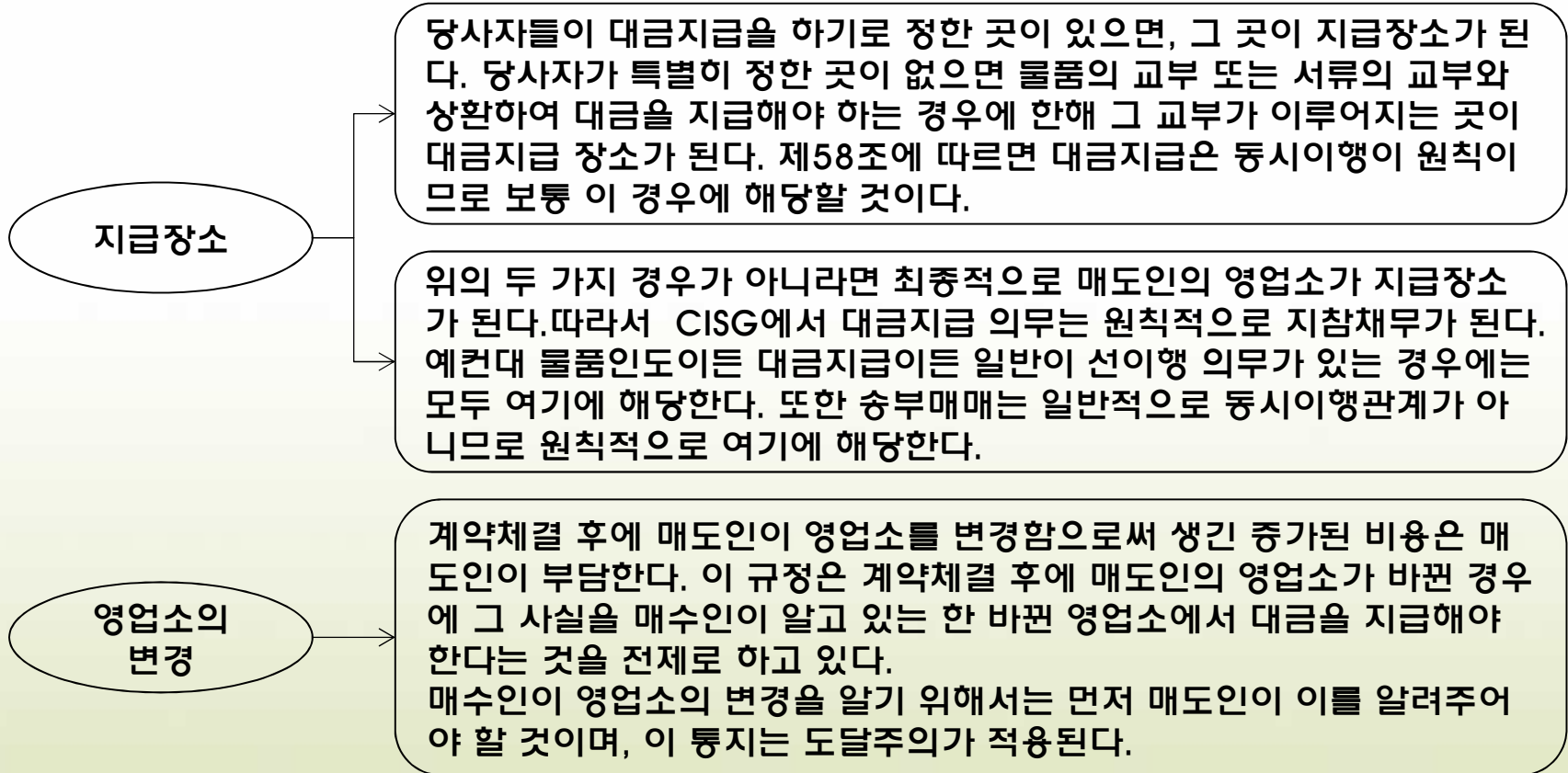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 장소(제57조)

-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 (나)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 지는 장소
- (2)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수수료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대금의 지급장소를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먼저 합의한 장소 → 다음으로 물품의 교부 또는 서류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교부장소 → 최종적으로는 매도인의 영업소이다.

■ 대금지급의 장소(제57조)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 대금지급의 시기(제58조)

-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지 않으면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 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 할 수 있다
-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기회를 가지는 것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당사자 의사나 관례, 관행에 의해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이 언제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정한다. 원칙적으로 인도와 대금지급 사이에 동시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매수인은 먼저 물품 검사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의 시기(제58조)

원칙

매수인은 매도인은 물품 또는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가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에 맡겨진 물품이나 서류를 매수인이 아직 수령하지 않았거나 거절한 경우에도 대금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이미 도래한 것이다.

송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인도한 것이 되지만, 그것은 물품이 아직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니므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에 비로소 매수인의 대금지급 시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송부매매의 경우 인도시기와 대금지급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외

그러나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송부매매에서도 대금지급과 상환하여 물품 또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매도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채권적 유치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매수인의 검사권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대금지급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검사권은 제38조와 같이 엄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간단하고 피상적인 검사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이 매수인의 검사와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없이 대금지급의 시기가 도래한다. 예컨대 신용장에 의한 지급인 경우가 보통 이에 속한다. 그러나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물품교부의 상황에서는 매수인의 검사가 요구될 것이다.

■ 대금지급의 시기(제59조)

매수인은 계약 또는 이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대금은 계약 또는 이 협약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때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의 지급요구 또는 최고 등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시기가 지나면 바로 계약위반이 되고 매도인은 제61조 이하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제78조에 따라 이자도 발생하게 된다.



감사합니다